

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신청인	기관 또는 단체명	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
설립목적

설립연도

「점자법」 제11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자교육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상근 책임자 및 상근 교육 강사 확보 현황 자료 2.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자료(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강의실 또는 사무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합니다) 3. 최근 3년간 점자의 사용 촉진,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


접 수



심사 및 결정



통지

신청인

처리기관
(문화체육관광부)